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영등포」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 신설 및 폐지
 - 홍보관광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 폐지
- 과 이관
 - 문화체육과 : 복지국 ⇒ 행정국
 - 기획예산과 : 행정국 ⇒ 재정국
 - 전산정보과 : 행정국 ⇒ 재정국
 - 환 경 과 : 도시국 ⇒ 복지국
 - 부동산정보과 : 재정국 ⇒ 도시국
- 과 명칭 변경
 - 기획홍보과 ⇒ 기획예산과
 -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 과 신설·폐지·이관에 따른 국별 업무 이관
 - 제5조(행정국) 제2항 제5호, 제6호, 제15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제6조(재정국) 제2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8조(도시국)으로 이관
 - 제7조(복지국) 제2항 제5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제7조(복지국) 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조(행정국)으로 이관
 - 제8조(도시국) 제2항 제9호, 제10호를 제9조(건설국)으로 이관
 - 제8조(도시국) 제2항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7조(복지국)으로 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기획 및 재정분야를 강화하고 관광·홍보기능을 보강하여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5조(행정국)에 “홍보관광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를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음.
 - 관광진흥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재정국)에 행정국에 있던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국으로 이관 하였으며 “전산정보과”도 행정국에서 재정국으로 이관하였음.
 -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복지국)에 “환경과”를 도시국에서 복지국으로 이관하였음.
 -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도시국)에 재정국에 있던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국으로 이관하였음.
 -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건설국)에 도시국에 있던 “도시디자인과”의 폐지에 따라 광
고물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관됨.
 -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본 개정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현재 6국(소), 1담당관, 32과, 18
동, 188팀이 6국(소), 1담당관, 32과, 18동, 194팀으로 조정되어
6개의 팀이 증가됨.
- 안 부칙에 시행일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의 설계와 운영도 이에 맞게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조직 변화관리가 필요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 및 재정, 관광 및 홍보
분야 등을 강화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본 조례개정의 전반적인 검토결과, 관련법규
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제에도 별다른 문
제점은 없으나 잦은 행정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주민들의 혼돈이 우려되
며 국간 업무 조정에 따른 일부 과의 소속국 변경이 해당 국 고유의 업무
영역에 적합한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8 호
----------	--------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영등포」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및 폐지

- 홍보관광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 폐지

나. 과 이관

- 문화체육과 : 복지국 ⇒ 행정국
- 기획예산과 : 행정국 ⇒ 재정국
- 전산정보과 : 행정국 ⇒ 재정국
- 환 경 과 : 도시국 ⇒ 복지국
- 부동산정보과 : 재정국 ⇒ 도시국

다. 과 명칭 변경

- 기획홍보과 ⇒ 기획예산과
-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라. 과 신설·폐지·이관에 따른 국별 업무 이관

- 제5조(행정국)제2항 제5호, 제6호, 제15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제6조(재정국)제2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8조(도시국)으로 이관
- 제7조(복지국)제2항 제5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제7조(복지국)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조(행정국)으로 이관

- 제8조(도시국)제2항 제9호, 제10호를 제9조(건설국)으로 이관
- 제8조(도시국)제2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7조(복지국)으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생략(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안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 6.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
14.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5.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1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 18.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19. 문화재에 관한 사항**
- 20.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21.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22.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
9.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10.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12.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3.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4.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 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5.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0.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1.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3.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1.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6.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기획홍보과" 를 "기획예산과" 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홍보과장" 을 "홍보관광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과장" 을 "홍보관광과장" 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홍보과" 를 "총무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기획홍보과" 를 "총무과" 로 한다.

제7조 중 "기획홍보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 를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시설담당주사”를 “교통개선담당주사”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둔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관광과 ,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7.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12.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3.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4.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15.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u>16.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u> <u>17.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 <u>18.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u> <u>19.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u>15.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u> <u>1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u> <u>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u> <u>18.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u> <u>19. 문화재에 관한 사항</u> <u>20.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u> <u>21.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u> <u>22.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u>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u> <u>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u> <u>2.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u> <u>3.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u>4.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u> <u>5.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u> <u>6.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u> <u>7.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u> <u>8.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9.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u> <u>10.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u>	<u>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를 둔다.</u> <u>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u> <u>2.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u> <u>3.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u> <u>4.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u> <u>5.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u>6.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u> <u>7.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u> <u>8.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u> <u>9.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u> <u>10.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1.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12.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8. 관광진흥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11.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2.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및 환경과 를 둔다.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 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2.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5.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0.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1.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1.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3.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3.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4.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5.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8.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0.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 <u>관리에 관한 사항</u>	10.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u>관한 사항</u>
1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u>복구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u> <u>한 사항</u>	11.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 <u>리에 관한 사항</u>
12.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u>관한 사항</u>	12.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u>복구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u> <u>사항</u>
13.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u>관한 사항</u>
14.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4.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u>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	15.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6.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6.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u>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
17.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